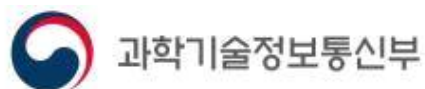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 안 내 서

2019. 7.



목 차

I. 사업개요	1
1. 목적	1
2. 지원방향	1
3. 초빙대상	1
4. 활용과제 및 분야	2
5. 주관연구기관	2
6. 활용방법	2
7. 지원기간 및 내용	3
8. 선정평가	6
9. 사업 추진 절차	9
II. 사업관리	10
1. 사업관리절차	10
2. 사업관리 주요내용	10
3. 주체별 역할과 책임	11
4. 해외고급과학자 관리 등	12
5. 사업 준수사항	13
6. 연구결과 사후 관리	13
III. 사업신청	14
1. 신청방법	14
2. 제출서류	14
3. 신청자격	15
4. 문의처	15
5. 추진일정	16

I. 사업개요

1 목 적

- 중견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공동참여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
- 국내 연구기관·대학·산업계의 부족한 우수 연구 인력을 중점 보완함으로써 산학연의 과학기술수준을 균형적으로 향상

2 지원방향

- 우수한 해외과학자와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 부족한 연구인력 중점보완을 통한 산·학·연의 과학기술수준 향상
- 국내 인력과 해외 고급과학자가 교류하며 개방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

3 초빙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과학자*
 - * 한국 국적의 초빙과학자는 공고 마감시 반드시 해외체류 중이어야 함(재신청 제외)
 - ※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 ※ 기존사업 수행과제(동일 연구책임자·초빙과학자)의 재신청 가능
 - ※ 과제 지원 후 3년 이내 재신청 가능, 3회차 까지 지원 가능(유형1)
 - ※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KRF)의 우수 종료자의 경우 사업신청자격 부여
- 우대사항
 - 재외한인·교포연구자 선발 우대를 위한 최소 선정쿼터(30%) 반영
 -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우수연구기관 재직 연구자(정규직) 초빙 신청시 유형 1 신규선정 우대

4 활용과제 및 분야

- 활용과제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필요한 국가전략적 추진과제로서, 해외고급과학두뇌 활용이 필요한 과제
- 활용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
 - 8대 선도 산업* 및 3대 전략투자** 분야 과제 선정 우대
 - * (8대 선도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 ** (3대 전략투자)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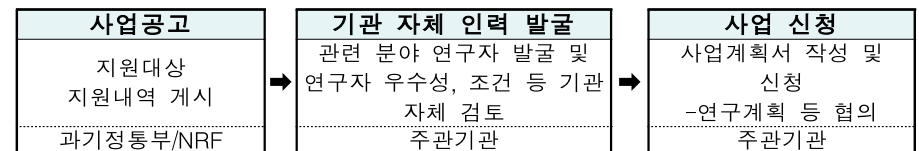
5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활용방법

- 국내 연구기관이 초빙대상 인력을 직접 발굴하여 과제 신청
 - 주관기관이 해외인력 유치 필요성, 해외고급과학자 역량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검증
 - 해외고급과학자 국내 연구활동 및 행정 등에 대한 지원체계 운영

<추진 절차>



7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유형1) 6개월~12개월*, (유형2) 3년(2+1)

* 산업체의 경우 3개월~12개월 지원가능, 최장 3년까지 재신청 가능(유형1)

※ 유형2의 경우 2년간의 연구실적 평가를 통해(단계평가) 추가 1년 지원 여부 결정

- (유형1 연구기간)

구분	연구기간(예시)	비고
6개월	2019.9.1.~2020.2.29.	선정통보 후 3개월내 입국
7개월	2019.9.1.~2020.3.31.	
⋮	⋮	
12개월	2019.9.1.~2020.8.31.	

- (유형2 연구기간)

년도	연구기간	비고
1차년도	2019.9.1.~2019.12.31. (최대 4개월)	선정통보 후 3개월내 입국
2차년도	2020.1.1.~2020.12.31. (12개월)	단계평가 실시(하반기)
3차년도	2021.1.1.~2021.12.31. (12개월)	추가지원 년도

○ 지원내용 : 초빙과학자의 인건비 및 유치경비

- 다음 페이지 비목별 지원내역 및 산정기준에 따름

< BP사업 지원 내역 >

구분	인건비	유치 경비
신규과제 (유형1, 유형2)	3 ~ 17백만원 / 월 (초빙과학자의 해외소속기관 수준 인건비)	3.4백만원~17.6백만원 / 년 (항공료, 이사비, 자녀교육비(학비) 보험료 등)
재신청과제 (유형 1)		

※ 인건비는 해외고급과학자의 보수, 연구업적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최소 3백만원/월 ~ 최대 17백만원/월) 하며 **4대 보험(개인, 기관 부담금), 소득세,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

※ 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건비의 70%만 지원

○ 지원 방식

- 사업비 교부 :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 개별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교부(해외고급과학자 입국 후 주관연구기관은 여권사본과 함께 입국보고서를 제출)
- 사업비 집행 : 개별협약 체결 후, 주관연구기관은 해외고급과학자에게 인건비를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유치경비는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 지급

① 인건비 : 월 300~1,700만원

- 해외우수과학자의 보수, 연구업적 등을 반영한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보수 산정기준>

- 초빙당시의 소속기관 연봉액을 기준으로 월 300만원 ~ 1,700백만원을 지원
- ※ 최대 2억원 지원/년, 4대보험(개인, 기관 부담금) 소득세,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 포함

<연구업적 산정기준>

- 연구업적 산정기준 점수 30점 이상시 월 인건비 5% 추가 지급

산정기준	배점	
	소계	총계
① · SCI Journal 게재(총 25점) · SCI Journal : 1편당 2점 · SCI Journal-E : 1편당 1점	단, ①과 ②의 합이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0
② 특허 취득건수 : 1건당 2점 (총 25점)		

② 유치경비(항공료, 이사비, 자녀학비(교육비), 보험료 등) : 최대 17.6백만원(실비)

- ※ 항공료·보험료·이사비·등 유치경비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한도 초과금액은 주관연구기관에서 부담
- 항공료 및 보험료 : 아래 지급기준 이내에서 실비정산

(단위 : 천원)

지 역	항공료+보험료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일본, 중국, 대만	3,400	5,300	6,200
동남아시아	3,600	5,700	6,600
인도, 서아시아, 중동	4,100	6,700	7,600
북미(서부), 호주, 유럽, 러시아	5,100	8,700	9,600
북미(중·동부)	5,600	9,700	10,600
중남미, 아프리카	6,600	11,700	12,600

※ 항공료 : 초빙과학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연구자 본인 왕복 항공료 지원(1회)

(12개월 이상 활용과제에 한해 동반가족 1인 왕복항공료(1회) 지원 가능)

※ 상해·질병보험료 : 주관연구기관이 보험회사 상품 활용

- 이사비(이주비) : 아래 지급기준 이내에서 실비정산

(단위 : 천원)

지 역	지 원 액
일본, 중국, 대만	500
동남아시아	600
인도, 서아시아, 중동	800
북미(서부), 호주, 유럽, 러시아	1,100
북미(중·동부),	1,300
중남미, 아프리카	1,600

※ 이사비는 12개월 이상 활용과제에 한하여 지원하며 입국시(연구개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실비 지급

- 자녀학비 : 12개월 이상 활용과제부터 연간 5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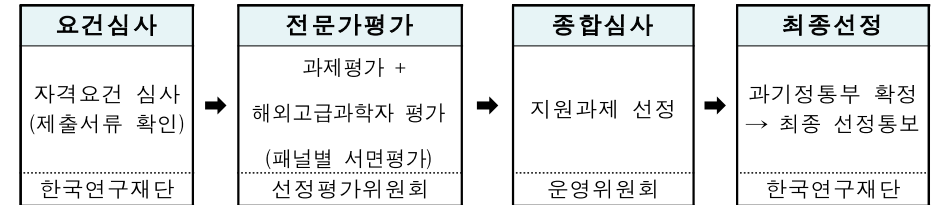
※ 해외고급과학자의 직계가족 중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학비 및 어린이 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유아의 보육비 지원(누리과정)

※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의 교육비 지원(외국인 학교(사립)의 경우: 입학비(등록비), 연간 학비(교육비))

- 국내여비 및 학회참가비(국내): 항공료 및 보험료, 이사비, 자녀학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국내여비 및 학회참가비 예산편성 가능

8 선정평가

가. 평가절차



나. (유형1) 신규과제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평가 (40)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지원 필요성	- 연구과제·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해당분야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필요성	15
	연구책임자 활용 역량 및 지원체계	- 연구책임자의 초빙과학자 활용역량(연구역량 및 네트워크, 연구비 확보 등) -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해외고급과학자 지원체계(연구 및 생활 지원 등)	15
	연구과제의 활용정도,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 협력 가능성	10
해외고급과학자평가 (60)	해외고급과학자의 역할	- 해외고급과학자의 담당업무 및 활용계획의 구체성 - 해외고급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여부 -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25
	해외고급과학자의 역량	- 해외고급과학자 학위 및 연구경력 - 해외고급과학자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특허, 학술활동 업적 ※산업체는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대체 가능	25
	기대효과 및 직무수행 의지	- 공동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 해외고급과학자 지원동기의 적극성	10
합계			100

- (유형1) 재신청 과제에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기존과제 연구실적 (70)	계획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연구계획서상 목표 달성 여부 - 연구결과 및 성과의 활용 여부	25
	연구수행 내용 및 방법	- 논문, 특허, 기술개발 등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연구수행 방법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20
	해외고급과학자 지원 현황	주관기관·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지원 현황(연구 및 생활 지원 등)	15
	해외고급과학자 활용도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적절성, 해외고급과학자의 성실성, 활용·협력 여부 등	10
	향후 연구계획 및 운영방향	- 연장 연구계획 및 내용, 운영방향 - 기존 연구내용과의 연계성 등	15
연장 연구계획 (30)	연구목표 및 방법	- 연장 연구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의 적절성·구체성 - 예산 집행 및 편성의 적정성 등	10
	연구수행 의지	주관기관·연구책임자·초빙과학자의 연구수행 의지	5
	합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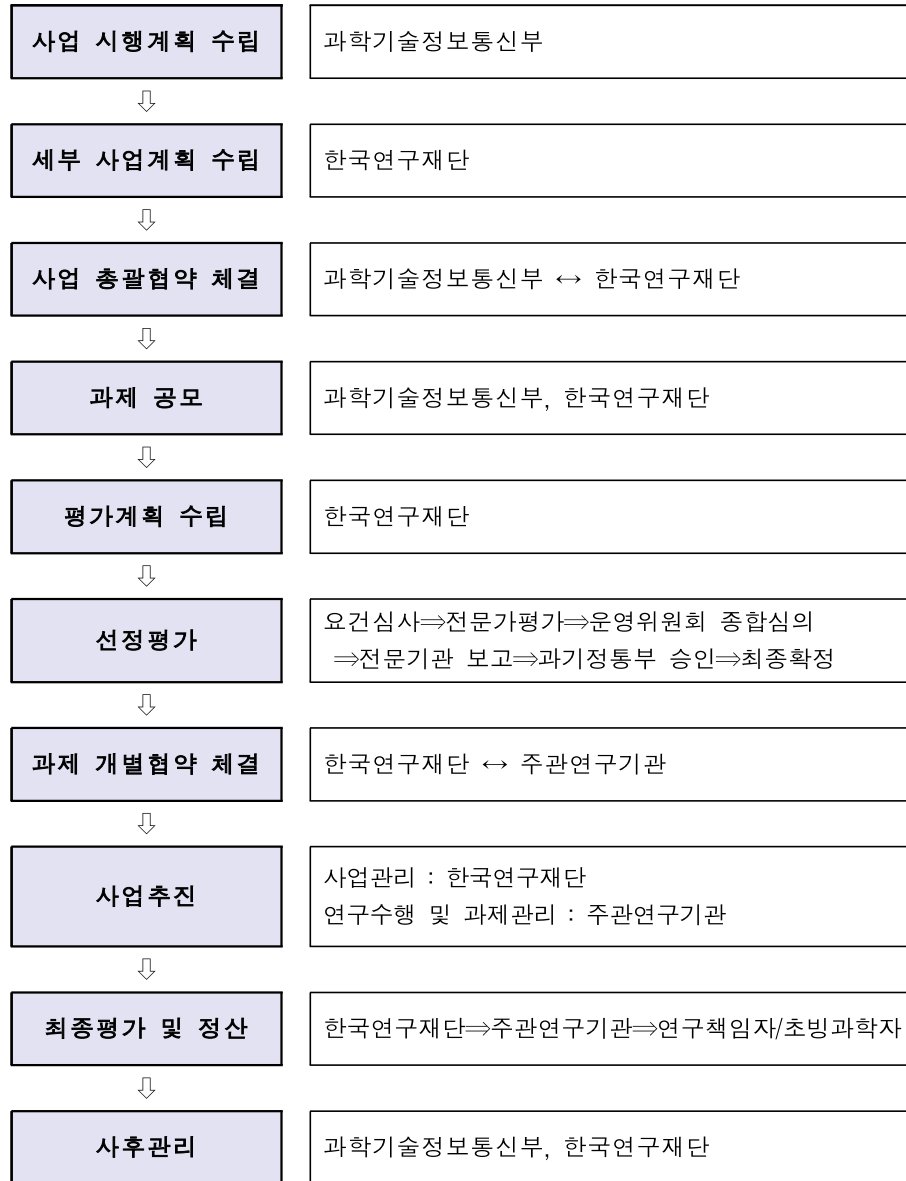
※ 기존 지원과제 재신청의 경우 신규 신청과제와 별도 평가지표로 심사 진행

※ 재신청 과제의 경우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점수의 3%~5%의 가감점 적용예정

다. (유형2) 평가항목 및 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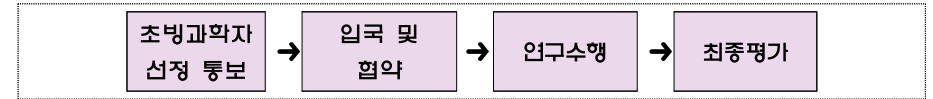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평가 (30)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지원 필요성	- 연구과제·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해당분야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고급과학자 활용 필요성	10
	연구책임자 활용 역량	연구책임자의 해외고급과학자 활용역량(연구역량 등)	10
	연구과제의 활용정도,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 협력 가능성	10
	소계		30
해외고급 과학자 연구계획 (30)	해외고급과학자 연구계획	- 해외고급과학자 연구계획 - 연구기간종료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계획	15
	주관연구기관의 지원의지	-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지원계획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지원, 연구공간, 연구환경지원, 행정지원 등) - 해외고급과학자의 정주지원계획(주거 등)	15
	소계		30
해외고급 과학자 평가 (40)	해외고급과학자의 역할	- 해외고급과학자의 담당업무 및 주관연구기관의 해외고급과학자 활용계획 구체성 - 해외고급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여부 -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15
	해외고급과학자의 역량	- 해외고급과학자 학위 및 연구경력 - 해외고급과학자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특허, 학술활동 업적 ※ 산업체는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대체 가능	15
	기대효과 및 직무수행 의지	- 공동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 해외고급과학자 지원동기의 적극성	10
	소계		40
	계		100

9 사업 추진 절차



II. 사업관리

1 사업관리 절차



2 사업관리 주요내용

- (유치요건 협의) 선정 통보 후 유치기관-초빙과학자 간 유치요건 최종 협의 후 협의결과 제출(유치기관→연구재단)
- (선정이후 제출서류 제출) 초빙과학자의 연봉 및 학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급여명세서, 최종학위증명서, 영문 초빙 수락서(소속기관))
 - ※ 선정통보후 별도 안내
- (협약용 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초빙과학자 입국 후 초빙과학자와 주관기관 간 계약체결 및 협약 체결
 - ※ 협약 체결시 협약용 계획서, 초빙과학자-유치기관 계약서, 초빙과학자 입국 보고서(여권 등), 해외고급과학자 서약서 등 첨부
- (사업비 지급 및 연구착수) 협약 체결 후 전문기관이 사업비 일괄 지급 및 연구착수
 - ※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착수(기한 내 미입국 시 선정 취소)
- (연구수행 및 연구비 관리) 사업지침 및 연구계획서 등에 따라 연구수행
 - ※ 계획대비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시, 전문기관 보고 및 승인 필요
- (연구비 정산)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결과보고 및 평가) 지원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평가 실시(전문기관)

3 주체별 역할과 책임

o 사업관리 주체별 아래의 **역할과 책임**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구분	역할 및 책임
주관연구기관	· 연구수행 및 연구비 관리 - 사업포기 및 협약해약 등 발생 시 사업비 회수·반납 등 · 초빙 과학자 지원 및 성과 등 전반적 사항 총괄관리 - 초빙 과학자 숙소 제공 등 정주여건 지원 · 과제 보안 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연구책임자	· 초빙 과학자의 근태·복무 관리, 진도·성과관리 · 연구비 관리, 연구수행 전반 지도 및 관리 · 국내인력과의 공동연구 체계 및 역량 개발 지원
전문기관	·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관리하고 홍보 및 정책지원 - 최종평가 및 인력/성과의 사후 관리 등

4 해외고급과학자 관리 등

o (근무) 초빙과학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전일 근무하며 연구를 수행

o (강의 및 연구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의 승인하에 대학 강의(1과목 이내) 또는 Brain Pool사업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타 R&D과제 참여 및 수행 가능(참여율 30% 이내)

o (유급휴가) 최대 연 20일 이내(협약 연구기간 12개월 기준)

※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근무일(휴일, 기관휴무일 제외)만 계산하며, 허용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인건비를 반납

※ 지원 중단시 유급휴가 일수는 최종 지원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

o (해외출장) 지원기간의 10% 이내에서 가능

- 해외출장 누적일수가 지원기간의 10% 초과 또는 1회에 10일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 가능하며, 1회 10일 이하의 해외출장은 시행 후 사후 보고

- 해외 출장 종료 후 출장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제출(출장 종료 후 7일 이내)

※ 해외출장에 대해 공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유급휴가에서 차감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회수

o (연구수행) 연구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연구수행에 공백에 발생하는 경우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회수 가능

5 사업 준수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원 중단 또는 협약 해약 가능
 - 국가에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거나, 고의로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해외고급과학자가 입국 및 과제 연구 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장 또는 해외고급과학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해외고급과학자가 주관연구기관 또는 타 기관에 취업한 경우
 - 출산, 병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해외고급과학자가 1개월 이상 연구수행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타 협약의 해지 사유 발생 시(현장점검 결과 등)
- 협약 해약시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 회수 의무가 있음
 - ※ 주관연구기관 또는 초빙과학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지원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치 가능

6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사업으로부터 얻은 지적재산권 등 모든 유무형의 권리는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의 규정 혹은 상호 합의 하에 결정
- 연구성과 발표물에는 아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
 -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해외고급과학자초빙(BP, Brain Pool)의 연구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Brain Pool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grant number)

III. 사업신청

1 신청 방법

- 주관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고급과학자를 발굴하여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ernd.nrf.re.kr)

☞ **【사업분류】** 교육인력양성사업(H1)-국제연구인력교류(H1D3)-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H1D3A2)

※ 자세한 사업신청 방법은 ‘별첨’ernd 접수 메뉴얼’ 참조

2 제출서류

과제 선정 전 제출 자료
- 사업신청서 1부 ① 붙임1-1(유형1_신규신청), ② 붙임1-2(유형1_재신청), ③ 붙임 1-3(유형2) 양식 중 택 1 ※ 신규신청 또는 기존과제 재신청 여부에 따라 사업신청서 양식 ①~③ 중 선택하여 작성·제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1부 - 연구윤리준수 약속서 1부
과제 선정 후 제출 자료(선정 과제에 한함)
- 초빙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재신청 과제의 경우는 직전 국내 소속기관에서의 급여명세서 제출) - 초빙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 - 초빙과학자의 영문 초빙 수탁서

3 신청자격

구분	자 격
주관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소장 이상인 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사업 운영기간 동안 재직이 보장되고 과제수행에 전념이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3책 5공 대상에서 제외
해외고급과학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과학자’ * 한국 국적의 초빙과학자는 사업 신청 시 반드시 해외체류 중이어야 함(재신청 제외) ※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과학 기술자도 가능 ※ 건강상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만 75세 이상* 연구자 초빙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국내 미도입 기술분야, 시급성이 인정되는 분야, 해당 분야에서 석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로 제한 * 적용 기준 : 1943.12.31. 이전 출생자

4 문의처

【 문 의 처 】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 (국/영문) 02-3460-5624, 5637 / E-mail : bpkrf@nrf.re.kr ※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접수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콜센터) ☎ 1544-6118

5 추진 일정

일 정	추진내용
'19. 6. 5.(수)	2019년도 제2차 사업 공고
'19. 7. 18.(목)	2019년도 제2차 사업 연장 공고
'19. 7. 31.(수)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19. 8. 1.(목)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18:00 마감)
'19. 8월 중	선정평가(요건심사,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19. 8월	최종선정

※ 동 사업안내서는 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므로 변경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은 사업운영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따름